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사무국장

제 목 「건강보험 임신 〮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변경 관련 추가 안내

1.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보험공지사항 64번(2019.02.08.)
3. 건강보험 임신 〮출산 진료비 지원제도(국민행복카드)와 관련하여 금액변경 및 사용기간 등 등에 대해 안내된 바 있으며,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(시행일 : 2019년 1월 1일)**

< 다 음 >

**○ 주요변경 사항**

- 지정요양기관 신청없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

- 한의의료기관의 제한 상병 관련 조항 삭제

(임산부는 임신 〮출산 관련 상병, 1세 미만 영유아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 사용가능  의료기관 | ‘지정요양기관’ 신청 후 | **‘지정요양기관’ 신청 불필요**  -임산부 :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 -1세미만 영유아 : 약국을 포함한  모든요양기관 |
| 한의의료기관  제한 상병 | 초기임신 중 출혈(O20)  임신중 과다구토(O21)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(O60.0)  산후풍(U32.7) 질환 | -**임산부의 임신 〮 출산 관련 상병**  -**1세미만 영유아 : 제한없음** |

**○ 유의사항**

- 시행일(2019.1.1.)이후 임신 〮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

〮금액 인상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나, 시행일 전 신청하여 이용 중인 경우 시행일

이후 1세미만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 가능

- 결재관련

〮진료비 수납 시, 단말기의 할부개월 입력에 ‘지원금 승인코드(**38**)’를 입력

〮5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,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단말기의 업그레

이드가 필요할 수 있음 (사용 단말기 업체에 문의)

〮진료 당일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,

지원 종료일 전이라면 재결제 가능, 카드 사용시작일 이전의 진료분은 결제 불가

□ 첨부 1. 건강보험 임신 〮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 사항 1부.

2. 임신 〮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(전문) 1부. 끝.



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

담당 과장 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

서한의 – 제 433 호 (2019.02.20.)

우)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(421호) / 홈페이지 : http://www.skma.or.kr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 / 공개여부